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27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박균택 · 허 영 · 박정현
박 정 · 김용만 · 박상혁
김주영 · 권칠승 · 양부남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법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방범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방범초소의 설치 등) ① 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방범초소의 설치가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는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u>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② (생략) <u><신 설></u>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 ----- ----- <u>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방법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방법초소의 설치 등)</u> ① <u>자율방범대가 방법초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읍·면·동별 1개소 이내</u>

의 방법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
고를 처리할 때에는 방법초소
의 설치가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
는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